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확대답안지

성 명	홍길동	직 렬	일반행정 7급
선택과목1	지방자치론	선택과목2	해당없음

문 제 책 형
● ○

응 시 번 호								생 년 월 일						관 리 번 호			
8	9	0	1	2	3	4	5	8	9	0	1	2	3	1	2	3	
	○	●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●	○	○	○	○	○	○	
	①		●	①	①	①	①	①	①	①	●	①	①	●	①	①	
	②			●	②	②	②	②	②		②	●	②	②	●	②	
	③				●	③	③	③	③		③	③	●	③	③	●	
	④					●	④	④	④		④	④		④	④	④	
	⑤				⑤	⑤	⑤	●	⑤	⑤		⑤	⑤		⑤	⑤	⑤
	⑥				⑥	⑥	⑥	⑥	⑥		⑥	⑥		⑥	⑥	⑥	
	⑦				⑦	⑦	⑦	⑦	⑦		⑦	⑦		⑦	⑦	⑦	
●	⑧				⑧	⑧	⑧	●	⑧		⑧	⑧		⑧	⑧	⑧	
⑨	●				⑨	⑨	⑨	⑨	●		⑨	⑨		⑨	⑨	⑨	

필적감정용 기 재 란	
------------------------	--

※ 필적감정용 기재란 예시 : 『본인은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.』

시험감독관 서 명 란	
------------------------	--

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

응시자 준수사항

□ 답안지 작성요령

※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되므로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답안지를 받으면 먼저 앞장에 인쇄된 본인의 성명, 응시직렬/직급, 응시번호, 생년월일, 선택과목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- 답안지를 교체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단 기재(표기)사항을 빠짐없이 본인이 직접 작성(표기)하여야 하며, 작성된 답안지는 **1인 1책만** 유효합니다.

※ 교체 전 답안지는 폐기처리 됨.

2. 답안표기는 각 문제마다 보기(①~④) 중 정답을 골라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“하나의 정답”에 표기하여야 합니다. (○, √, ●, / 등 표기 허용)

- 연필로 표기한 경우에는 무효처리 됨

- 답안수정시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(단, 삭선 및 수정액·수정스티커 등 금지(무효처리))

삭선, 수정액·수정스티커 등으로 이중표기된 경우 무효처리됨 ⇒ 반드시 수정테이프 사용

3. 필적감정용 기재란 : 본인 필적으로 기재란 아래의 예시와 같이 기재

4. 부정행위 등 금지 안내

※ 다음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따라 그 시험의 정지, 무효, 합격취소,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1. 시험 시작되기 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.
2. 시험기간 중 일체의 **통신기기**(휴대폰, 태블릿PC, 스마트시계, 이어폰 등) 및 **전자기기**(전자계산기, 전자사전 등)를 **소지할 수 없습니다.**
3. **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,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무효처분을 받게 됩니다.**
 - 답안, 책형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(표기) 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교체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4. 답안기재가 끝났더라도 시험종료 후 **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, 사용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**
5. 그 밖에 공고문의 응시자 준수사항이나 시험감독관의 **정당한 지시 등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자로** 간주될 수 있습니다.

관리 번호	1	①	●	②	③	④	⑤	⑥	⑦	⑧	⑨
	2	①	①	●	③	④	⑤	⑥	⑦	⑧	⑨
번호	3	①	①	②	●	④	⑤	⑥	⑦	⑧	⑨
	C	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A B ● D E									

< 제 과 목 > O, V, ●, / 등 표기 허용

문제 1	①	②	③	④
문제 2	①	②	③	④
문제 3	①	②	③	④
문제 4	①	②	③	④
문제 5	①	②	③	④
문제 6	①	②	③	④
문제 7	①	②	③	④
문제 8	①	②	③	④
문제 9	①	②	③	④
문제 10	①	②	③	④

답안지 예시